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수집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 파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1482호, 2026. 03. 17. 공포, 2026. 06. 18. 시행)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영상정보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신설(안 제17조의2)
- 나.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신설(안 제17조의3)
- 다. 영상정보의 파기방법 신설(안 제17조의4)
- 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및 수정(안 제39조, 별표5)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율주행자동차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17조의3(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
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
성 확보 조치를 해야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2.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
3.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필요한
조치. 다만, 영상정보의 국외반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의8 및 제28조의9를 따른다.

4.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에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4(영상정보의 파기방법) ①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제1호 외의 영상정보의 인쇄물,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제1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별표5 제1호라목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별표5 제2호 가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

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중전의 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1호”를 “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중전의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2호”를 “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중전의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3호”를 “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바목(중전의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4호”를 “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중전의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5호”를 “제3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아목(중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자목(중전의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중전의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카목(중전의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3호”를 “제2항제3호”로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5조 제1항제1호	250	350	500
나. 법 제2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5조 제1항제2호	250	350	5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7조의2(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 설>	제17조의3(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2.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 3.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필요한 조치. 다만, 영상정보의 국외반출에 대해서는 「개인정

<신 설>

보보호법」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를 따른다.

4.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에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4(영상정보의 파기방법)

①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u>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u> <u>2. 제1호 외의 영상정보의 인쇄물,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과쇄 또는 소각</u> <u>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제4항----- ----- -----.
--	--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5조 제1항제1호	250	350	500

나. 법 제2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5조 제1항제2호	250	350	500
다.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 당한 사유 없이 법 제36조제2호 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 에 관련된 정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3항제1호	250	350	500
라. 법 제34조제3항(법 제29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 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 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 우	법 제55조 제3항제2호	250	350	500
마. 법 제35조제1항(법 제29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 업무의 장애예방·대응계획을 수 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3항제3호	250	350	500
바. 법 제35조제4항(법 제29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 업무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않 은 경우	법 제55조 제3항제4호	250	350	500
사.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 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 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3항제5호			
1) 법 제39조에 따른 이 영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				

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1호	
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150만원
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150만원에 6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2) 법 제39조에 따른 이 영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한 후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 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보충하여 예치하지 않은 경우		
가)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 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보충하여 예치하지 않은 기간이 5일 이하 인 경우		150만원
나)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 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보충하여 예치하지 않은 기간이 6일 이상 인 경우		150만원에 6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아.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 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 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정해진 기간 이상 보관하지 않거나 사고 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 장치와 그 기록된 내용을 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1)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2) 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500만원

자.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4항			
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 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60만원		
차.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2호			
1)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 영 제35조의7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속 직원 중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같은 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2)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 영 제35조의7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사실을 도로의 다른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20만원	30만원
3)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 영 제35조의7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또는 위험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절차(탑승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포함한다)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4)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 영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제35조의7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별표 4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해당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5)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 영 제35조의7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가)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		
나)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100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지연기간이 100일 초과인 경우	100만원		
6)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 영 제35조의7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7)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 영 제35조의7제3항제7호를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3호	500만원	

비고: 제2호마목2)의 기간은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보충해야 하는 기간인 7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54